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간생략 등기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홍보 요청

1. 서울특별시 지방세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회에 감사드립니다.

2.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고 잔금 지급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등기선례 제6-216호, 법원행정처 2001.8.30.)

3. 그러나, 지방세법 제6조·제7조 및 지방세기본통칙 지법7-7에서는 “매매 계약 체결 후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기 전에 매도자가 사망하고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최근 중간생략 등기 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취득세 신고납부 미이행 사례가 자주 지적되어 가산세 등 경제적 부담이 납세자에게 가중되고 있는 바, 귀 회의 회원이 세무·등기·중개 대리인으로 중간생략 등기 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 또는 등기 신청 등을 하는 경우, 상속인이 취득세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귀 회의 홈페이지 및 회보 등을 통해 회원에게 홍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기타 의문사항은 서울시 세무과 (담당: 이준영, 전화 2133-33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청



수신자 한국공인회계사회장(0373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정로7길 12 한국공인회계사회 (충정로2가)),
한국세무사회장(06660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105 한국세무사회 (서초동)), 대한법무사협회장
(06116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08784 서울특별시 관악
구 남부순환로 1722 (봉천동)), 한국세무사고시회장(06169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7길 17
903호 (삼성동))

주무관	이준영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3/14 임출빈
협조자	주무관	김대진			

시행 세무과-6066 (2017.3.15.) 접수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 전송 02-2133-1034 / ping@seoul.go.kr / 대시민공개